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1. 공급내용

- 공급위치 : 인천 청라국제도시 A1BL(경서동 930-1)

- 공급규모 및 내역 : 총 418세대

[아파트 지하1층 ~ 지상 25층, 총 5개동 41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세대

구분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급세대	기관추천
71A	71.3679	95.3170	244	24
71B	71.5966	95.7925	50	5
71C	71.0928	95.8138	124	12
계			418	41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공급세대수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2. 특별공급 일정 (예정)

-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일시 장소

구분	일시(예정)	장소
입주자모집공고	2016. 2. 26(금)	
건본주택 개관	2016. 2. 26(금)	인천 서구 연희동 793-21
특별공급 접수 및 당첨자발표	2016. 3. 2(수)	건본주택 방문 접수 당첨자 명단 건본주택내 공개
당첨 동호수 발표	2016. 3. 10(목)	금융결제원(www.ap2you.com) 당사홈페이지(cn.miraedo.com)
계약일	2016. 3. 15(화) ~ 3. 17(목)	건본주택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바랍니다.

3.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자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아래조건을 충족하여야함.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및 제28호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제38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9조 제3항 관련)

(단위: 만원)

지역 주택의 전용면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체가 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36조 제1호 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제35조에서 제46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 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있는 경우를 말한다)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경우
3. 사업주체가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조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경우

-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2.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단,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특별공급 신청용으로 지자체(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